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35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서왕진 · 정춘생 · 신장식
박은정 · 이해민 · 백선희
김종민 · 김재원 · 강경숙
차규근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상기후(「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 장소

제39조제1항제7호 중 “폭염·한파에”를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①·② (생략)	제38조(안전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이상기후(「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 장소</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제39조(보건조치) ① ----- ----- -----

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u>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u> 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 -----. 1. ~ 6. (현행과 같음) 7. <u>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u> <u>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u> <u>경에서</u>----- -- ② (현행과 같음)
--	--